

#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년 7월 12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7월 1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· 제129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6년 7월 21일)  
상정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사회복지과장 이춘구)

### □ 제안이유

- 긴급지원의 연장결정, 긴급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각 시·군·구에 두도록 하는 것으로 『긴급복지지원법』이 제정(법률 제7739호, 2005. 12. 23. 공포, 2006. 3. 24. 시행, 유효기간 5년)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골자
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신하도록 정함.(안 제3조제1항제5호 신설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가 1년에 서너 번 하기 힘든데 긴급지원 심의라는 것은 긴급할 때 당장 위기에서 구제해야 하는 기능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긴급 지원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?</p>	<p>○긴급지원사항 발생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1차적인 심의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1차는 구청에서 하고 2차 연장할 때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데 문제는 없음.</p>

### 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### 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#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2호
의결 년월일	2006. 7. 27 (제129회)

제출년월일 : 2006. 7. 12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# □ 제안이유

- 긴급지원의 연장결정, 긴급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각 시·군·구에 두도록 하는 것으로 「긴급복지지원법」이 제정(법률 제7739호, 2005. 12. 23. 공포, 2006. 3. 24. 시행, 유효기간 5년)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골자
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신하도록 정함.(안 제3조제1항제5호 신설)

##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

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유효기간)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4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능)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 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5. (생략)</p>	<p>제3조(기능) ①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「<u>긴급복지지원법</u>」 제12조의 <u>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</u>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